

폐과(전공, 학과)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21.1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46조 단서에서 정한 폐과(전공(학과), 이하 폐과) 교원의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폐과’라 함은 전공(학과)의 폐지가 결정되어 전공(학과)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전공(학과)를 말한다.

② ‘예비폐과’라 함은 ‘폐과’되기 이전에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 기준 입학정원)의 전문학사과정 에 두는 모집단위의 전공(학과)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전공(학과)를 말한다.

③ ‘예비폐과일’이라 함은 ‘폐과’되기 이전에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 기준 입학정원)의 전문학사과정 에 두는 모집단위의 전공(학과)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해당 학년도 학기 개시일을 말한다.

④ ‘폐과기준일’이라 함은 ‘폐과’로 인하여 전공(학과)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학기 개시일을 말한다.

⑤ ‘폐과교원’이라 함은 ‘예비폐과’와 ‘폐과’에 소속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폐과 기준) 전공(학과) 폐과 기준은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과교원 소속 변경) 폐과교원의 소속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제1호는 제5조를 적용하고, 제2호는 제6조를 적용한다.

1. 희망하는 전공(학과) 또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 변경
2. 재교육을 통한 학과(전공) 소속 변경(제4조1호의 심사 탈락자만 해당)

제5조(폐과교원의 소속 변경 절차) 제4조 제1호에 의거한 폐과교원의 소속 변경은 1회에 한하여 1개 전공(학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폐과교원은 소속 전공(학과) 변경 신청서(별지서식 1)을 예비폐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원인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폐과교원 소속변경 신청시 과거 관련 실무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교원인사부서장은 소속 전공(학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전공(학과)로 신청사항을 통보하고, 전공(학과)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
3. 해당 전공(학과)는 교원인사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폐과교원의 소속전공(학과)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전공회의 논의를 거쳐 소속전공(학과) 변경 요청에 대한 전공(학과)의견서(별지서식2)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인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원인사부서장은 폐과교원의 소속 전공(학과)변경 신청서(별지 서식1)와 소속전공(학과)변경 요청에 대한 전공(학과)의견서(별지서식 2)를 첨부하여 폐과소속 교원의 소속전공(학과) 변경승인에 대한 심의를 전공변경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5. 교원인사부서장은 전공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전공변경 대상자 및 탈락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청교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6. 소속 전공(학과) 변경신청 탈락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인사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재교육을 통한 학과(전공) 변경 절차)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전공변경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은 1회에 한하여 재교육을 통한 학과(전공)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차 전공변경심사 탈락 결과를 통보받은 폐과교원은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속변경 희망 전공(학과)에서 기본시수 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2개 교과목 이상의 강의준비 계획을 포함한 재교육 계획서를 소속변경 희망전공의 확인을 거쳐 교원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재교육에 의한 해당 전공의 강의개발 기한은 예비폐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무교육 과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예비폐과일로부터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3. 재교육을 통한 전공강의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강의준비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학기개시일 90일 이전에 소속 전공(학과) 변경 신청서를 교원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 제2호, 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절차에 따라 소속 변경한다. 단 제5조의 3호 절차시 공개강의 등의 방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공변경심의위원회) ①폐과교원의 전공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원인사팀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촉한다.
- ③위원장은 교원인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구조조정부서장 및 교무학사부서장, 해당 스쿨원장(변경희망 전공(학과) 스쿨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전공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교내·외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⑤위원회는 폐과 교원이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전공(학과)의 현재 소속 교원 수 및 소속 교원의 전공 및 학생 수, 교육과정 편성 및 강의담당 시수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 ⑥위원회는 전공(학과) 변경 건에 관하여 별지서식 4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심의결과 80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전공(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을 추천한다.
-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폐과교원의 직권면직) ①폐과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직권면직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폐과교원(신청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교원 포함)
2. 제6조에 따라 재교육을 통한 전공(학과)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전공변경 신청에 탈락한 폐과교원.
- ②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과 협의를 통하여 전담직 전임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①항의 직권면직일은 폐과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재학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이 0명이 되는 학기 개시일에 직권면직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폐과교원의 명예퇴직) 폐과교원의 명예(희망)퇴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관 및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에 한하여 명예(희망)퇴직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유아교육과와 스마트미디어 전공은 2021년9월1일을 예비 폐과일로 적용한다.

(별지 서식 2)

소속 전공(학과) 변경 요청에 대한 전공(학과) 의견서

항목	배점	점수	비 고
신청교원의 희망 전공(학과)과의 전공 관련성	15		
신청교원의 희망 전공(학과)의 과목에 대한 강의능력	15		
신청 전공(학과)와의 융합성	10		
합계점수	40		
종합의견			

폐과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3호에 의거 본 전공(학과)에 소속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전체 스쿨교원이 합의하여 제출합니다.

(회의록 별첨-자유양식(년월일시 명기))

20 년 월 일

변경 전공(학과) 전체 교원 서명

교원인사부서장 귀하

(별지서식 4)

폐과 교원 심사 평정표

폐전공(학과) 명		대상자 성명	
심사기준	배점	점수	비 고
1. 소속 전공(학과) 변경요청에 대한 전공(학과) 의견서	40		
2. 교육 및 강의 역량	15		
3. 전공(학과)의 관련성	15		
4. 전공기여도 및 자기개발계획	10		
5.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성실도	10		
6. 대학기여도 및 발전가능성	10		
합 계	100		
<p>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심사자: (서명)</p>			